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99구7708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참여연대

피고 한국전기통신공사

변론종결 2000. 11. 29.

주문

- 피고가 1999. 11. 5. 원고에게 한 별지목록 2.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2.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4. 피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관련의 목적을 들어 별지 목록 기재의 5개 항목 및 1970년부터 1999. 9.까지의 매년 설비비 수입내역과 총 누적액, 같은 기간의 매년 유선 전화가입 회선수와 연도별 누적치 등 7개 항목에 관한 정보 일체를 사본,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11. 5. 별지 목록 기재의 5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위 2개 항목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의 5개 항목에 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별지목록 기재의 5개 항목 중 순번 3. 내지 5.의 3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이하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공개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1., 2.의 2개 항목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국민에는 법인 등의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단체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에 의하여 의제된 권리주체이므로 자연인과는 달리 그 단체의 목적, 구성 및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1,2의 항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은 우리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보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6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달리 정보공개의 청구를 위한 요건으로 당해 정보와 관련된 사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개인의 권리의 위해서 뿐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도 행사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특히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다목에서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 등 단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전화요금이라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대하여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한 공기업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는 시내전화가설 및 가입자 관리에 들어간 비용내역 및 누적액과 시내전화요금 산정 방식 및 원가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는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법에 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어 그 정보공 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의 항목에 관한 정보는 단순한 원가산출내역 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정보법 소정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의 항목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자료들을 피고가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별지 목록 2. 기재의 항목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원가정보라는 것이 경쟁시장에서 해당기업의 영업 및 투자활동, 사업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하여 매년 엄격한 원가검증을 받고 있고 위 기관이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에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협약한 점 등에 비추어 정보법 제7조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정보법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다. 판단

(1)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대한 판단

(가) 정보법 제2조 제1호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관한 자료가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 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1997. 8.부터 10.까지의 기간동안 전국의 전화국 중 17개 전화국을 표본으로 하여 계산해낸 추정치에 불과하여, 위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목록 1.기재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에 대한 판단

(5) 다음으로 시내전화요금(기본료, 통화료)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이 정보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조 소정의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이 그와 같은 생산,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원가내역에 관한 정보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원가내역에 관한 정보가 정보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시내전화요금의 원가내역은 일반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결정과정에 관하여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가내역에 관한 정보는 위와 같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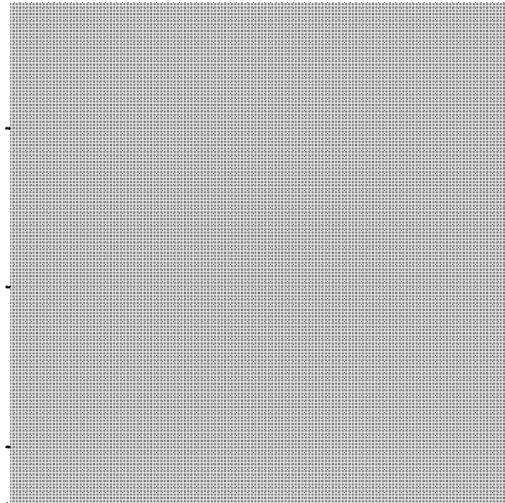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2.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10.

재판장 판사 주경진

판사 윤승은

판사 곽내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목 록

1. 1970년부터 1999. 9. 현재까지 매년 시내전화 가설 및 가입자 관리에 들어간 비용내역 및 총 누적액
2. 시내전화요금(기본료, 통화료)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3. 1998. 신가입제도 도입 후 가입전화한 가입자의 수
4. 1998년부터 1999. 9. 현재까지 명예퇴직한 피고 직원의 숫자와 명예퇴직금의 총액
5.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문서. 끝.